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항공본부에 산림항공훈련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산림재난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의 정원 1명(연구관 1명)을 전문경력관 가군으로 전환하며, 산림청에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4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산림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2) 입법예고(2023.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2023년 2월 24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039”를 “1,04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39”를 “1,040”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2”를 “3”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2023년 2월 24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한시정원)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 호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구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3년 2월 24일까지</u>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림청에 둔 다. ② (생 략)	제37조(한시정원) ① ----- ----- ----- ----- ----- ----- <u>2024년 12월 31일</u> ----- ----- --.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산림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39</u>	<u>1,040</u>	+1
일반직 계	<u>1,039</u>	<u>1,040</u>	+1
·	·	·	
·	·	·	
전문경력관	<u>2</u>	<u>3</u>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6